

2022학년도 교내장학 운영 세부 계획 및 2학기 교내장학금(2차) 신청 안내

연번	장학 성격	구분	기준금액	선발기준/제출서류
1	등록금	교직원장학	수업료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: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가족(배우자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직원의 근무(계약) 기간을 참고하여 심사 후 수혜여부 결정 ※ 수혜기준: 전공심화과정 교직원이 중도 퇴사(입사)하는 경우 퇴사(입사)일이 수업일수 1/2 초과시 전액 수혜 (이의 수업일수는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) ■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직원 본인 : 재직증명서 - 교직원 직계가족: 가족관계증명서,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* 신규(복학)장학생 서류제출 필, 복학으로 인한 갑변 누락자 학과 신청
2	등록금	다문화장학	1,0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: 학생(한국 국적)이 다문화 가정의 일원인 자 ※배우자는 제외 ■ 제출서류: 가족 중 외국인임을 증명가능한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 1부 ※ 제출서류는 기본증명서만 제출가능 주민등록등본, 여권 서류 인정 불가
3	등록금	보훈장학금	수업료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: 국가유공자 자녀, 5-18민주화유공자 자녀, 특수일부수행자 자녀 등의 대학 수업료 지원 - (교외) 경기남부보훈지청 교부금 - (교내) 국제대학교 장학금 ■ 제출서류: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(보훈지청발급)
			입학금50%	
4	등록금	북한이탈주민장학	수업료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: 북한이탈주민 재학생 - (교외) 남북하나(북한이탈주민지원)재단 - (교내) 국제대학교 장학금 ■ 제출서류: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(통일부발급) ※ 증명서상 "비교"의 수혜 횟수, 잔여기간 및 횟수 등 확인 필 - 신입생: 입학금 50%, 수업료 50% - 재학생: 수업료 50%
			입학금50%	
5	등록금	외국인인재장학	수업료 30% (입학 학기1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: 정원내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※ 유의사항: 외국인인재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입학장학 종류 수혜 불가 - 신입생: 입학금 100%, 수업료 30% - 재학생: 토픽(TOPIK)성적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 추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수업료 30%: 토픽(TOPIK) 3급 ↳ 수업료 40%: 토픽(TOPIK) 4급 ↳ 수업료 50%: 토픽(TOPIK) 5급 이상 ※ 감면일(후지급자는 신청일)기준 토픽(TOPIK) 자격 유지(유효)여부 확인
			입학금 100%	
			수업료 30%	
			수업료 40%	
			수업료 50%	
6	등록금	외국인특별전형장학	수업료 30% (입학 학기1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: 외국인특별전형 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※ 유의사항: 외국인특별전형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입학장학 종류 수혜 불가 - 신입생: 입학금 100%, 수업료 30% - 재학생: 토픽(TOPIK)성적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 추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↳ 수업료 30%: 토픽(TOPIK) 3급 ↳ 수업료 40%: 토픽(TOPIK) 4급 ↳ 수업료 50%: 토픽(TOPIK) 5급 이상 ※ 감면일(후지급자는 신청일)기준 토픽(TOPIK) 자격 유지(유효)여부 확인
			입학금 100%	
			수업료 30%	
			수업료 40%	
			수업료 50%	
8	등록금	생활복지장학1종 (학생지급)	수업료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★유의사항: 생활복지장학1종으로 등록금을 갠면 받거나, 수업료 전액 수혜지는 장학금으로 전액 등록금 갠 받았으므로 후지급 신청자격 없음 유형①<국가장학 수혜자> 국가장학 소득분위(0-2)장학생 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■ 선발기준: 국가장학금 소득분위(0-2)이면서 교내장학금 기준에 적합하나 * 소득분위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입생으로 생활복지장학1종으로 등록금 선감면 받지 못한 학생 ■ 제출서류: 없음 유형②<국가장학 미수혜자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-1.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0-2분위로 확인이되나, 성적 또는 수혜횟수 초과등의 사유로 국가장학을 받지 못한 학생 ■ 제출서류: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※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방법: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→장학금→증명서발급→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→발급하기 ①-2. 국가장학 미신청자로 소득분위가 확인 되지 않으나,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관련자(기초생활 수급자격)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■ 제출서류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- 기초생활급여수급자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*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
9	등록금	생활복지장학2종	1,5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: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관련자(차상위계층 수급자격)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■ 제출서류: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이 관련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: 기초주거급여수급자, 기초교육급여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: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: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④ (경중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: 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⑤ 자활근로자 확인서: 차상위자활대상자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⑦ 차상위 계층 확인서: 차상위 계층 대상자 ■ 제출서류 발급처 ※ 관인 명의로 된 증명서 제출 ① 기초/차상위 서류 -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장애인 증명서류(본인 명의 장애인 증명서)-읍면동주민자치센터, 정부24

2022학년도 교내장학 운영 세부 계획 및 2학기 교내장학금(2차) 신청 안내

연번	장학 성격	구분	기준금액	선발기준/제출서류
10	등록금	생활복지장학3종	1,000,000 직계가족 동시제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본인 및 직계가족(배우자, 형제자매 포함) 동시에 제학하는 경우 한 명의계만 지급됨 * 다만, 동시에 제학하는 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지급 기준은 장학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■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계가족 중 한명만 교내장학금 신청 ※ 1학기 제학 하는 경우만 해당 (지급일자 기준 직계가족 중 한명이 휴학상태인 경우 탈락) ■ 제출서류 : 직계가족 학생의 국제대학교 재학증명서,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
			1,000,000 본인 또는 직계가족 장애중증/경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본인 및 직계가족(본인, 배우자, 형제자매 포함)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장애 정도로 확인 - (중증) 정도가 심한 장애로 표시 - (경중)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시 ■ 제출서류 : 장애인증명서,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※ 장애인등록증 인정 불가